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2022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영풍건설 산업 <sup>(주)</sup> (이승철)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25번길 1-2, 1층4호(전대리)	건축공사업 (10-2141)	영업정지 5개월 ('23.1.2. ~ '23.6.1.)	<b>건설업 등록기준 미달</b> - 보증가능금액 실효(2022.1.13.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
(취더유니드 이엔씨 (홍서진)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 번길 22-16, 502호(다산동)	건축공사업 (10-3624)	영업정지 5개월 ('23.1.2. ~ '23.6.1.)	<b>건설업 등록기준 미달</b> - 보증가능금액 실효(2022.3.23.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